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무회의 규정

제정	2012.	3.	1.	개정	2013.	2.	22.	개정	2013. 4. 12	•
개정	2016.	7.	5.	개정	2016.	9.	1.	개정	2016. 10. 24	•
학칙개정	2017.	7.	3.	개정	2017.	8.	25.	개정	2017. 10. 19.	
전부개정	2021.	2.	25.	학칙개정	2021.	10.	1.	개정	2021. 12. 30.	
개정	2022.	3.	30.	개정	2022.	11.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23조에 따라 교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칙개정 2021. 10. 1.) 제2조(구성) ①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총장
- 2. 부총장
- 3. 일반대학원장
- 4. 단과대학장
- 5. 처장 및 사무국장
- 6. 교육기본시설의 장
- 7. 지원시설의 장 중 공동실험실습관장
- 8. 부속시설의 장 중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개정 2022. 11. 15.)
- ② 제1항의 교무회의 위원에 부처장, 그 밖의 부속시설 등의 장 및 부부

서장,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교무회의(이하 "확대교 무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2. 3. 30., 2022. 11. 15.)

③ 의장은 총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부총장이 된다.

제3조(임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장 및 부의장) ① 의장은 회의를 관장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단과대학, 대학원, 학부(과)·전공 및 부속시설 등의 설치와 폐지에 관 한 사항
- 2. 학칙과 모든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4. 고사·시험에 관한 사항
- 5. 학생지도·장학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정례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소집한다. 다만, 의장은 제7조에 따라 상정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정례회의 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 교무회의를 소집할수 있다.
- ④ 교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교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 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

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심의를 포함)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 ⑤ 확대교무회의에는 과 · 실장 등이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수 있다.
- 제7조(상정안건 제출) 해당 부서에서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교무처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간사 등) 회의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 제9조(회의록) 회의 내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사항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제11호, 2012. 3. 1.)

이 규정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6호, 2013.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0호, 2013. 4.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2호, 2016. 7.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6호, 2016. 9. 1.)

이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9호, 2016. 10.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88호, 2017. 7.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1호, 2017. 8.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5호, 2017. 10.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92호, 2021. 2.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35호, 2021. 10.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59호, 2021.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75호, 2022. 3.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2호, 2022. 1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